

군산시 공고 제2015 - 4호

군산시 체육시설관리운영 및 징수조례 개정조례 입법예고

군산시체육시설관리운영 및 징수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산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규정 제4조1항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7월 8일

군 산 시 장

1. 개정이유

- ◇ 군산 실내 배드민턴장 건립에 따른 시설 전용사용료 및 이용료, 부대시설 사용료 규정을 됴으로서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도모할 수 있도록 정비하고자하며,
- ◇ 국무조정실 등 관계 중앙부처 합동으로 추진 중인 불합리한 자치법규 지방규제 개선대상으로
 - 군산시 체육시설관리 운영 및 사용료 징수조례 제18조(손해 배상)제2항의 사용자가 주관하는 행사 및 경기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고에 대하여 사용자의 민·형사상 책임을 지우는 사항은 법률사항으로 조례로 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아니하므로 개정하고자 함

2. 개정법규명

◇ 군산시 체육시설관리 운영 및 사용료 징수조례

3. 주요내용

가. 체육시설관리운영 및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 개정

- 1) 체육시설관리운영 및 사용료 징수조례 사용시간 일부 개정 - (안“제9조제⑥항”)
- 2) 체육시설관리운영 및 사용료 징수조례 사용료 및 이용료의 감면·할인 일부 개정 - (안 “제12조제②항 ”)
- 3) 체육시설관리운영 및 사용료 징수조례 손해배상 일부 삭제- (안“제8조제②항”)

나. 체육시설 전용사용료 및 이용료 일부 신설 및 개정 - (안 “제 10조①항 ”)

- 1) 군산실내배드민턴장 전용사용료 징수규정 신설 - (안“별표1”)
- 2) 군산실내배드민턴장 이용료 징수규정 일부 신설 및 개정 - (안“별표2”)
- 3) 시설사용료 중 게시등 부착광고물 사용료 신설 - (안“별표5”)

4. 의견제출

가.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15년 7월 28일까지 아래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군산시장(참조:체육진흥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 제출사항

- 1)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이유)
- 2) 의견 제출자의 성명 (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

다. 의견 제출할 곳

우)573-430 군산시 변영로 281번지 군산시 체육진흥과
(전화:454-5573, FAX:454-5569)

- 라. 의견제출 : 서면, 전화, 팩스, 직접방문, 컴퓨터통신 등 어느 방법이든 가능함.
- 마.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 체육진흥과 운영담당(454-5573)부서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라북도 군산시 조례 제 호

군산시 체육시설관리 운영 및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산시 체육시설관리 운영 및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축구장·군산시공도장”을 “축구장·군산시공도장·군산실내배드민턴장”으로 한다.

제9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⑥군산실내배드민턴장의 운영시간은 06:00~22:00까지로 한다. 단,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별도로 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10조제1항과 제3항 중 별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1중 월명체육관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월명체육관 군산실내배드민턴장

별표 2중 월명체육관란 다음에 군산실내배드민턴장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군산실내배드민턴장	2시간당	2,000
-----------	------	-------

별표 2중 “어린이의 이용료는 기본료의 70%를 징수함.”을 “어린이, 청소년, 경로대상자,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 이용료는 기본료의 50%를 감면함.”으로 한다.

별표 5중 (월명체육관) 게시등 부착 및 입식광고물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월명체육관)
(군산실내배드민턴장)
게시등 부착 및
입식광고물

제12조제2항 중 “수영장”을 “수영장·군산실내배드민턴장”으로 한다.
제18조제2항을 삭제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용료를 감면·할인할 수 있다.

① (생략)

②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영장 이용료의 50%를 할인할 수 있다.

제18조(손해배상)① (생략)

② 사용자가 주관하는 행사 및 경기로 인하여 시설내에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사용자는 민사 또는 형사상 책임을 진다.

③ (생략)

-----.

① (현행과 같음)

② -----수영장, 군산실내 배드민턴장-----.

① (현행과 같음)

<삭제>

③ (현행과 같음)

【별표 1】 <개정96.01.12,2002.05.15,2004.07.30,2007.11.30, 2009.05.15, 2012.08.16>

체육시설 전용사용료

(단위 : 원)

구 분	사 용 목 적	휴 일 (토요일포함)	평 일	초 과 요 금	
주 경 기 장	우레탄트랙	체 육 경 기 체 육 이 외	75,000 105,000	50,000 70,000	8시간 표준 초과시 표준액의 1/2 가산
	인조잔디구장	체 육 경 기 체 육 이 외	75,000 105,000	50,000 70,000	축구경기는 1게임(2시간) 원칙 (초과게임당 2할 가산) · 4시간 표준 초과시 표준액의 1/2가산<신설 2007.11.30>
야 구 장 <개정2004.07.30, 개정2009.05.15 개정2012.08.16>	체 육 경 기 체 육 이 외	50,000 105,000	40,000 60,000	· 야구경기는 1게임(4시간) 원칙 · 4시간 표준 초과시 표준액의 1/2가산<신설 2007.11.30>	
테 니 스 장 (1면당) <개정2004.07.30>	체 육 경 기 체 육 이 외	15,000 17,000	10,000 12,000	· 8시간 표준 초과시 표준액의 1/2 가산	
월 명 체 육 관 군산실내배드민턴장	체 육 경 기 - 주간(1회) - 야간(1회)	60,000 90,000	40,000 60,000	· 8시간 표준 초과시 표준액의 1/2 가산	
	체 육 이 외 - 주간(1회) - 야간(1회)	300,000 450,000	200,000 300,000	· 8시간 표준 초과시 표준액의 1/2 가산	
족 구 장 <신설 2009.05.15>	체 육 경 기 체 육 이 외	10,000	5,000	· 2시간 기준	
수송공원 축 구 장 <신설 2009.05.15>	체 육 경 기 체 육 이 외	30,000 50,000	20,000 30,000	· 2시간 기준 · 4시간 기준(표준초과시 5할 가산)	
생말공원 축 구 장 <신설 2009.05.15>	체 육 경 기 체 육 이 외	30,000 50,000	20,000 30,000	· 2시간 기준 · 4시간 기준(표준초과시 5할 가산)	
금강공원 축 구 장 <신설 2009.05.15>	체 육 경 기 체 육 이 외	30,000 50,000	20,000 30,000	· 2시간 기준 · 4시간 기준(표준초과시 5할 가산)	

-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간주
- 주간 사용자가 야간 사용시간 1시간이상 초과 사용시는 야간사용자로 간주함
- 등록장애인은 50%를 할인 징수함<신설2002.05.15>
- 이후 조성되는 체육시설은 “전용사용료” 를 기준으로 징수할 수 있다. <신설2012.08.16>

【별표 2】 <개정 2002.05.15, 2003.05.31, 2007.11.30, 2012.08.16>

체 육 시 설 이 용 료

(단위 : 원)

구 분	기 간	개 인(1인당 이용료)	비 고
주경기장(육상트랙)	2시간당	300	
주경기장(인조잔디구장)	“	2,000	
야 구 장	“	2,000	
테 니 스 장 (1면당)	“	2,000	
월 명 체 육 관	“	1,000	
군산실내배드민턴장	“	2,000	

- 어린이, 청소년, 경로대상자,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 이용료는 기본료의 50%를 감면함.
- 단체는 동일종목 1개팀(동일소속) 20인 이상으로 하고 해당 기본료의 80%를 징수함
- 월 회원 이용료는 1인당 당해 기본료에 20일을 곱한 금액을 징수함
- 테니스장의 클럽회원은 1면당 월 300,000원을 징수한다.
(단, 1면당 사용인원을 30인이하로 하며, 각종 경기 등 행사시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 테니스 수강료는 월 50,000원을 징수한다. (단, 수강료 납부한자는 입장료를 납부한 것으로 본다)
- 초과시간당 이용료는 기본료의 50%를 가산 징수함
- 등록장애인 및 그와 동행하는 보호자 1인에 대하여 기본료의 50%를 징수함.

<신설2002.05.15>

【별표 5】 <개정96.01.12,2004.07.30,2012.08.16>

상행위 및 광고물 시설 사용료

[단위 : 원]

구 분	기 준	금 액	비 고
에드벌론 계양	1일 1개	30,000원 (1일초과 5,000원/1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삭제<2012.08.16> · 기준면적 초과 광고물설치시 기본요금에 초과면적을 곱한 금액을 추가 징수할수 있다 <개정 2004.07.30>
게시등 부착 광고물 (야구장, 주경기장)	전당 1,2m×10m 이내	5일이내 100,000원 (1일초과 10,000원/일)	
게시등 부착 광고물(야구장 외야펜스) <신설 2012.08.16>	전당 2m×8m 이내	1,000,000원 (당해년도에 한함)	
(월명체육관) (군산실내배드민턴장) 게시등 부착 및 입식 광고물	전당 1,2m×10m 이내	년간 1,000,000원 5일이내 50,000원 (1일초과 5,000원/일)	
(노 점) 고 정 식 이 동 식	1일 개업소 1인 1일	m ² 당 1,000원 10,000원	차량포함 차량제외

군산시 공고 제 2015-1142호

군산시전통산업보존구역지정및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등에관한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공고

군산시 전통산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개정이유

- 『유통산업발전법』이 2013. 1. 23일 개정되고 2013. 7. 24.이후 전면 시행된 사항이 군산시 조례에 미반영 되거나 법조문과 자구가 상이한 사항을 개정
- 정부의 불합리한 지방규제 정비 요청에 부응하여 상위법에 맞지 않는 규제 내용을 정비하여 유통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고 소비자를 보호

2. 주요내용

- 기간경과에 따라 부칙 인용조항 삭제
 - 부칙 제2항 중 “제6조제7호·제8호” 를 삭제
-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상위법과 일치

구 분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대규모점포SSM 신규입점시)	유통분쟁조정위원회 (기존 대중소기업 분쟁조정시)	비고
위원장	호 선 ⇒ 부시장	부시장 ⇒ 호 선	
위원수	15명 ⇒ 9명	15명이내⇒11명이상 15명이내	
기 타	회의운영 등 상위법과 일치화		

- 불합리한 정부규제 개혁과제에 포함되어 개정
 - 지정취소 취지에 부합된 전혀 다른 내용 삭제
 - 영업시간 제한 예외 : 농수산물 매출액 비중 51%를 55%로 수정
 - 법령상 근거없는 규제인 ‘상생협력사업계획서’ 제출조항 삭제
- 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등록제한 규정을 법과 동일하게 신설
 - 전통산업보존구역내 전통상인회 사업개시 동의를 없는 경우
 - 10분의1이상 면적 증가시 점포위치가 전통산업보존구역에 있을 때

3. 의견서 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5년 8월 7일까지 군산시장 (참조 지역경제과장)에게 의견을 제출하거나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주소
- 기타 참고 사항 등 (이메일, 팩스 접수시 꼭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 연락처 063-454-2703, FAX 063-454-2659, E-mail(moonggie@korea.kr)
보내실 주소 : (우 573-703) 전라북도 군산시 시청로 17번지(조촌동, 군산시청 지역경제과)

2015. 7. 15.

군 산 시 장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조례명 : 군산시전통상업보존구역지정및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등록제한등에관한조례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찬성여부		의견	비고
	찬성	반대		

군산시전통상업보존구역지정및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등에관한조례 일부 개정조례 「안」

제1조 중 “법제13조의3제2항”을 “법제13조의3”으로 한다.

제2조제3호 중 “법 제2조제3호의2”를 “법 제2조제4호”로 하고, 같은 조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대형유통기업”이란 법 제2조제3호 및 별표에 규정된 대형마트, 전문점, 백화점, 쇼핑센터, 복합쇼핑몰, 그 밖의 대규모 점포를 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제2조제5호 중 “제1호”를 “제4호”로, “사람으로써”를 “자로서”로 한다.

제5조제1항 “둘 수 있다”를 “둔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위원장”을 “회장”으로 “15명이내”를 “9명이내”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제5조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사항 이외의 협의회 위원 구성과 임기, 위원 해촉, 회의운영, 협의회 업무 등에 필요한 사항은 법 제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의2 및 제4조의3의 사항대로 한다.”로 하며 제3항의 1호~9호를 삭제하고 제4항~제10항을 삭제한다.

제6조를 삭제한다.

제9조를 삭제한다.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7조”를 “대규모 점포를 개설하거나 제7조”로, “대규모점포 또는 준대규모점포(이하 “대규모점포등”이라 한다)”를 “준대규모점포”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5항에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전통상업보존구역내 전통상인회 사업개시 동의를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4. 개설등록 당시의 매장면적보다 10분의1이상을 증가하는 대규모점포 등의 위치가 법 제13조의3에 따른 전통상업보존구역에 있을 때

제10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대규모점포 중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대형마트와”를 “대형마트(대규모 점포에 개설된 점포로서 대형마트의 요건을 갖춘 점포를 포함한다)와”로 하며 “51퍼센트”를 “55퍼센트”로 한다.

제13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제1항 “둘 수 있다”를 “둔다”로 한다. 같은 조 제3항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를 “위원중에서 호선하고”로 한다. 같은 조 제4항 “유통담당국장”을 “유통담당과장”으로 한다. 같은 조 제5항 “유통담당과장”을 “유통담당 공무원”으로 한다.

제14조 제1호에서 “1호”를 “제1호”로 하고, 같은 조 제2호에서 “제1항1의 2호”를 “제1항 제2호”로 한다. 같은 조 제3호에서 “제2호”를 “제3호”로 한다.

제15조 “하되, 연임할 수 있다”를 “한다”로 한다.

제16조 제2항 “7일전까지”를 “5일전까지”로 한다. 동조 제5항을 신설한다.

⑤ 위원회는 법 제37조, 법 제38조, 법 제39조, 법 제40조, 법 제41조, 법 제42조와 동일한 활동을 한다.

부칙(2011.01.03 조례 제970호) 제2항 중 “제6조제7호·제8호,”를 삭제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를 신설한다.

6.·7. (생 략)

제5조(유통업상생발전협회의 구성·운영) ① 시장은 대형유통기업과 중소기업 간 상호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군산시 유통업상생발전협회(이하 “협회” 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협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협의회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협의회 위원은 유통업 관련 업무 국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군산시 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2. 지역내 상공회의소 관계자
3. 지역내 대학에서 유통관련 전공 대학교수
4. 지역내 개설 또는 개설하고자 하는 대형유통기업 점포의 대표
5. 지역내 재래시장, 슈퍼마켓, 상가 등 중소기업 대표
6. 지역내 소비자단체의 대표
7. 지역내 소상공인지원센터

6.·7. (현행과 같음)

제5조(유통업상생발전협회의 구성·운영) ① -----

----둔다.

② -----회장-----
9명 이내-----
-----회장은 부시장이 된다.

③ 제5조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사항 이외의 협의회 위원 구성과 임기, 위원 해촉, 회의 운영, 협의회 업무등에 필요한 사항은 법 제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의2 및 제4조의3의 사항대로 한다.

관계자

8. 지역내 유통산업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9.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④ 협의회의 원활한 업무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유통업 관련 업무 과장이 된다.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하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 기간으로 한다.

⑥ 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여 회의를 총괄하며 위원이 사망, 질병, 그밖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해촉할 수 있다.

⑦ 협의회는 년 2회 이상 개최하되,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소속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

⑧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협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⑨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

성으로 의결한다.

⑩ 그 밖에 협의회 운영과 관련된 사항은 협의회 의결을 거쳐 회장이 정한다.

제6조(협회의의 업무) 협의회는

<삭 제>

대형유통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상생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능 및 사업을 수행하거나 중재할 수 있다.

1. 대형유통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상생발전을 위한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대형유통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상생발전선언의 채택 및 상호 우호증진을 위한 행사 등의 개최에 관한 사항
3. 대형유통기업의 중소기업에 대한 상품진열, 위생관리, 마케팅, 물류효율화 및 정보화 등 정보제공, 교육 및 컨설팅지원에 관한 사항
4. 지역 내 중소기업이 생산하는 상품의 구매 및 판로개척을 위한 협력에 관한 사항
5. 대·중소유통업 균형발전을 위한 공동 조사연구 사업의 실시에 관한 사항
6. 상생발전 유공자에 대한 포

상 또는 포상추천, 대정부 건의 등 상생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협의회가 인정하는 사항

7. 제7조에 따른 전통상업보존 구역의 지정에 관한 사항

8. 제10조제4항에 관하여 시장이 협의를 요청하는 사항

9. 제1호부터 제8호까지에 규정된 사항 외에 대·중소유통업간 상생발전촉진 및 지역유통산업 발전을 위한 협력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제9조(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 취소등) 시장은 제7조제1항에 따른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제7조제3항 각 호의 사항을 게시판과 인터넷홈페이지 등에 공시한다.

제10조(대규모점포등 개설등록 등) ① 제7조에 따라 지정된 전통상업보존구역 안에서 대규모 점포 또는 준대규모점포(이하 “대규모점포등”이라 한다)를 개설등록을 하려는 자(전통상업보존구역 안에 대규모점포등의 일부가 포함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다음 각

<삭 제>

제10조(대규모점포등 개설등록 등) ① 대규모 점포를 개설하거나 제7조-----준대규모점포-----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생 략)

2. 개설로 인하여 직접적인 영
향을 받는 「전통시장 및 상
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전통시장이나 중소기업
청장이 정하는 전통상점가와
상생하기 위한 구체적 방법
등을 제시하는 상생협력사업
계획서

3. (생 략)

②. ~ ④. (생 략)

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
을 제한할 수 있다.

1. · 2. (생 략)

<신 설>

<신 설>

제10조의2(대규모점포 등에 대한
영업시간의 제한 등) 시장은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의2
에 따라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

-----.

1. (현행과 같음)

2. <삭 제>

3. (현행과 같음)

②. ~ ④. (현행과 같음)

⑤ -----

1. · 2. (현행과 같음)

3. 전통상업보존구역내 전통상
인회 사업개시 동의를 이루어
지지 않은 경우

4. 개설등록 당시의 매장면적보
다 10분의1이상을 증가하는
대규모점포 등의 위치가 법
제13조의3에 따른 전통상업보
존구역에 있을 때

제10조의2(대규모점포 등에 대한
영업시간의 제한 등) -----

근로자의 건강권 및 대규모점포 등과 중소유통업의 상생발전을 위하여 대규모점포 중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대형마트와 준대규모점포에 대한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을 다음과 같이 정할 수 있다. 다만, 연간 총매출액 중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수산물의 매출액 비중이 51퍼센트 이상인 대규모점포 등은 제외한다.

1. 2. (생략)

제13조(유통분쟁조정위원회 구성·운영) ① 시장은 유통에 관한 분쟁의 조정을 위하여 유통분쟁조정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시장은 위원으로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위촉할 수 있다.

1. ~ 5. (생략)

④ 위원은 유통담당국장을 당연직으로 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둘 수 있으며, 간사는 유통담당과장으로 한다.

제14조(기능) 위원회는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조정한다.

- 1. 법 제36조 제1항 1호에 따른 분쟁

 -----대형마트(대규모 점포에 개설된 점포로서 대형마트의 요건을 갖춘 점포를 포함한다)와-----

 -----55퍼센트-----
 -----.

1. 2. (현행과 같음)

제13조(유통분쟁조정위원회 구성·운영) ① -----

 -----둔다.

② -----
 -----11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

③ ----- 위원중 에서 호선하고-----
 -----.

1. ~ 5. (현행과 같음)

④ -----유통담당과장-----
 -----.

⑤ -----

 ----- 유통담당 공무원-----
 -----.

제14조(기능) -----
 -----.

- 1. ----- 제1호-----

2. 법 제36조 제1항1의 2호에
따른 사항

2. -----제1항 제2호-----

3. 법 제36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분쟁

3. -----제3호-----

제15조(위원회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15조(위원회의 임기) -----
-----한다.

제16조(회의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제16조(회의 등) ① -----
-----.

② 위원장이 위원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일시·장소 및 안건을 기재한 회의소집통지서를 회의개최 7일전까지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

-----5일전까지-----

-----.

<신 설>

⑤ 위원회는 법 제37조, 법 제38조, 법 제39조, 법 제40조, 법 제41조, 법 제42조와 동일한 활동을 한다.

부 칙(2011.01.03 조례 제970호)

부 칙(2011.01.03 조례 제970호)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① (시행일) -----
-----.

② (유효기간) 제6조제7호·제8호, 제7조부터 제12조까지는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제1항 중 준대규모점포와 관련된 부분, 제8조제2항 및 제3항 및 제13조의3의 규정이 효력을 가지는 기간까지 효력을 가진다.

② (유효기간) <삭제>-----

-----.

③. ~ ④. (생략)
<신 설>

③. ~ ④. (현행과 같음)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군산시 공고 제2015-1150호

군산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74조 항목 변경에 의한 개정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구성에서 기금관련 분야의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3분의 1이상 참여하도록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제74조제1호마의 규정을 제74조제1항제6호의 규정으로 변경

(안 제7조제①항)

나.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위원에 기금관련 분야의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를 3분의 1이상 참여하도록 함(안 제10조제④항)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74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7조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입법예고 : '15. 7월중

마. 규제심사 : 해당없음

전라북도 군산시 조례 제 호

군산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산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중 “영 제74조제1호마”를 “영 제74조제1항제6호”로 한다.

제10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④위원은 재난과 관련이 있는 군산시 소속 국장 또는 과장과 기금관련 분야의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민간위원은 위원수의 3분의 1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7조(기금의 임대주택 이주지원 및 임차비용 용자 등) ① 시장은 영 제74조제1호마의 규정에 따라 지원하는 세대당 임대주택 이주지원비는 이주에 소요된 실비를 지원한다.</p> <p>②·③ (생략)</p>	<p>제7조(기금의 임대주택 이주지원 및 임차비용 용자 등) ① ----- <u>영 제74조제1항제6호</u>----- ----- ----- ---.</p> <p>②·③ (현행과 같음)</p>
<p>제10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① ~ ③ (생략)</p> <p>④위원은 <u>재난과 관련이 있는 군산시 소속 국장 또는 과장중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회의 정원 범위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u></p> <p>⑤ (생략)</p>	<p>제10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① ~ ③ (현행과 같음)</p> <p>④위원은 <u>재난과 관련이 있는 군산시 소속 국장 또는 과장과 기금관련 분야의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민간위원은 위원수의 3분의 1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u></p> <p>⑤ (현행과 같음)</p>

【별표 1】 현행 군산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군산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제정) 2005.06.13 조례 제 657호

(일부개정) 2011.12.26 조례 제1012호

(일부개정) 2014.04.28 조례 제1134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7조 규정에 따라 적립된 재난관리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2011.12.26>

제2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 『재난및 안전관리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 1.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적립금
- 2.『재난관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운용수입 <개정2011.12.26>
- 3.그밖에 잡수입 등<개정2011.12.26>

제3조(기금의 운용·관리) 군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누계잔액(매년 적립해야 될 법정적립액과 발생한 이자를 말한다)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법정적립액의 100분의 15 이상 금액(이하 “장기예치기금액”이라 한다)은 가급적 이자율이 높은 금융 기관의 예금에 예치·관리하여야 하고 나머지 금액과 발생한 이자(이하 “해당연도사용 기금액”이라 한다)는 해당연도에 사용이 가능하도록 별도로 운용·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11.12.26>

제4조(장기예치기금액의 예치·관리) 장기예치기금액은 군산시의 지정금고(「지방재정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정한 금융기관을 말한다)에 예치·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금융기관이라함은 「국가재정법 시행령」 제46조항제4항 및 「은행법」 제2조제1항에 의한 금융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1.12.26>

제5조(해당년도사용기금액의 운용,관리) ①해당년도사용기금액은 제6조의 규정에 따른 용도에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지정금고에 관리하여야 한다.<개정2011.12.26>

②해당년도사용기금액의 사용잔액과 발생한 이자는 기금결산 후 누계잔액에 포함하여 운용·관리하여야 한다. <개정2011.12.26>

제6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법 제68조제2항, 영 제74조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과 다음과 같은 용도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 1.안전사고예방을 위한 경고판 등 안전시설 설치
- 2.인명구조장비 등 안전장비 확보
- 3.재난예방 홍보물 제작
- 4.재난관련 장비 구입
- 5.「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55조에 따른 자연재해저감시설의 설치(재난 예보·경보시설 설치로 한정) 및 보수·보강
6. 자동우량경보시설, 자동음성통보시스템, 재해문자전광판, 산간계곡 자동경보시설 등 재난 예보·경보 시설
7. 인명 및 재산피해가 우려되는 급경사지 계측시설
8. 수해·강풍 등 피해시설의 응급복구 및 응급조치
9. 상습가뭄재해지역의 임시 용수확보 대책사업
10. 설해·수해대비 자재구입 및 장비의 임차 등

11. 풍수해저감계획, 비상대처계획(EAP) 수립, 재해복구사업 분석평가
12. 침수흔적조사, 특정관리대상시설 안전진단
13. 피해지역 공간영상자료 수집, 항공사진측량
14.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 확산방지를 위한 긴급대응 및 응급복구

제7조(기금의 임대주택 이주지원 및 임차비용 용자 등) ①시장은 영 제74조제1호마의 규정에 따라 지원하는 세대당 임대주택 이주지원비는 이주에 소요된 실비를 지원한다.<개정2011.12.26>

②법 제40조 내지 법 제42조의 규정에 따라 대피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주민에 대한 세대당 주택 임차비용 용자규모는 총 소요금액의 70% 이하로 하고 용자한도액은 3천만원이하로 하되 용자기금 규모와 용자신청자의 수를 감안하여 결정한다.

③그밖에 기금의 용자조건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기금의회계관리) 이 기금의 수입·지출 및 출납보관에 관하여는 군산시재무회계규칙에 준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회계공무원) ①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

1.기금운용관 : 건설교통국장

2.기금출납원 : 안전총괄과 복구지원계장<개정2007.01.30, 2011.12.26, 2014.04.28>

②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6조의 규정에 따라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개정2011.12.26>

제10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①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장 소속하에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2011.12.26>

③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건설교통국장이 된다.

④위원은 재난과 관련이 있는 군산시 소속 국장 또는 과장중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회의 정원 범위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개정2011.12.26>

⑤위원회의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복구지원계장이 된다.<개정2007.01.30>

제11조(위원회의심의사항) 제10조의 규정에 따른 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의 운용계획
2. 기금운용계획의 변경사항
3. 기금의 결산
4. 그밖에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12조(위원회의 운영) ①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정기회의는 다음연도의 기금운용계획과 전년도 기금결산을 심의하기 위하여 연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수시로 개최한다.

③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3조(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①시장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의 및 「지방재정법」 제53조의 규정에 따라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 폐쇄 후 80일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개정2011.12.26>

②기금의 운용계획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금의 조성계획
2. 기금의 사용계획
3. 기금의 운용방법
4. 그밖에 기금의 운용상 필요한 사항

③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서와 결산보고서를 매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2005.06.13 조례제 657호)

-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경과조치)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 군산시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 및 군산시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에 의하여 운영되고 있는 기금은 이 조례 규정에 의한 재난관리기금으로 본다.
- ③(폐지조례)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군산시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 조례 및 군산시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부칙(2011.12.26 조례제201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4.04.28 조례제 1135호) <군산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 ①부터 ③까지 생략
- ④ 군산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2호중 “재난관리과”를 “안전총괄과”로 한다.

- ⑤부터 ⑥까지 생략

[별표 2] 관계법령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시행 2015.6.30.] [대통령령 제26373호, 2015.6.30., 일부개정]

국민안전처(안전기획과) 02-2100-0423

제9장 보칙 <신설 2014.2.5.>

제74조(재난관리기금의 용도) 법 제68조제2항에 따른 재난관리기금의 용도는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12.8.23., 2014.2.5.>

- 1. 재난 및 안전관리를 위한 공공분야 재난 예방활동
- 2.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55조에 따른 방재시설의 설치(같은 조 제9호에 따른 재난 예보·경보시설의 설치로 한정한다) 및 보수·보강
- 3. 재난피해시설(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시설로 한정한다)에 대한 응급복구 또는 긴급한 조치
- 4. 지방자치단체의 긴급구조능력 확충사업
- 5.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의 확산 방지를 위한 긴급대응 및 응급복구
- 6. 법 제40조부터 제4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대피명령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주민에 대한 임대주택으로의 이주 지원 및 주택 임차비용 융자
- 7. 재난의 원인분석 및 피해 경감 등을 위한 조사·연구
- 8. 재난피해자에 대한 심리적 안정과 사회 적응을 위한 상담활동

[전문개정 2011.6.27.]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시행 2014.11.19.] [대통령령 제25751호, 2014.11.19., 타법개정]

행정자치부(재정정책과) 02-2100-3518

제7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구성) 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는 기금운용 또는 기금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3분의 1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 의안 소관 부서명 >

군산시 건설교통국 안전총괄과	
연 락 처	(063) 454 - 3852

군산시 공고 제 2015-1153호

군산시 건축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군산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5년 7월 일

군 산 시 장

군산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지방규제 집중개선에 따른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과 건축기준 등을 개선하고 건축행정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등 현행 조례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건축행정의 내실화를 기하고자 함.

2. 주요내용

[법령개정에 따른 조례 정비]

가. 전문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5조, 안14조의1)

나. 상위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적용의 완화 등에 관한 사항을 상위 법령에 맞게 정비 (안 제1조, 제20조5항, 6항, 7항)

- 도시지역 및 비도시지역 동, 읍에 해당되는 지역에서 건축물 건축시 대지와 도로와의 관계 등 적용완화 신설
 - 단독주택(신고대상 건축물에 한함)
- 방재지구·붕괴위험지역에 재해예방을 위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 120%이내 완화규정 신설
- 녹색건축물 조성을 활성화하기 위한 기준에 적합한 건축물의 경우
 - 조경면적, 용적률 등 완화규정 신설

다. 실내건축에 대한 검사대상 건축물과 검사주기 신설(안 제32조의1)

- 검사주기 : 5년
- 검사대상 : 다중이용건축물, 분양건축물

라. 건축협정을 체결할 수 있는 구역 및 건축협정서에 명시되어야 할 사항 신설(안 제32조의2)

- 구역 : 도시 및 주거환경개선이 필요한 도시재생사업구역
- 건축협정서에 명시되어야 할 내용 : 건축협정서 작성에 관한 사항, 건축협정 변경 또는 폐지에 관한 사항, 건축협정 이행계획에 관한 사항, 건축협정 이행에 소요되는 비용, 운영에 관한 사항 등

마. 상위법에서 건축물의 높이제한 완화규정 폐지(안 제41조)

[규제 권고사항 개선 및 불합리한 법규 정비]

바. 건축위원회 위원 임기를 현실에 맞게 정비(안 제6조)

- 3년 이내 → 2년

사. 소위원회 위원 구성요건 정비(안 제14조)

- 5명이상 7명 이내 → 5명이상

아. 건축 공사현장 안전관리에치금 예치 보증기간 명시

(안 제23조제4항)

- 건축공사기간에 1년이상 가산한 보증서 제출규정 신설

자. 지방규제 집중개선에 따른 불합리한 자치법규 일괄정비

(안 제24조, 안 제27조)

- 제24조(표준설계도서에 의한 건축신고) 문구수정
- 제27조(가설 건축물) 제3항 문구수정

차.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계획에 따라 너비 20미터 이상의 도로변에 맞벽건축 기준을 정함(안 제40조)

- 층수 : 2동이하, 5층이하
- 용도 : 단독주택, 제1,2종 근린생활시설(분양 건축물은 제외)

카. 상위법에서 정하도록 한 공개공지의 확보기준 정비 (안 제43조)

- 위임범위 초과조항을 상위법에 맞게 조정
- 공개공지 확보시 용적률 등 인센티브 부과기준 마련(1.2배이하)

타. 구조에 심대한 영향을 주는 중량물인 태양광발전시설 공작물로 명시(안 제45조)

- 8톤 이상의 태양광 발전시설의 공작물 적용 및 관리
- 파. 기타 조례 운영상 미비사항 개선 및 보완 등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 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15년 8월 4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군산시장 (참조 : 건축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 제출사항

-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 의견과 그 이유)
-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나. 의견 제출할 곳 :

우 570-703 군산시 시청로 17 (조촌동) 군산시청 건축과
(전화 : 063-454-3742, FAX : 063-452-8828)

다.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팩스, 직접방문, 인터넷 등 어느 방법이든 가능함.

라.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청 건축과 주무관 나광장 (전화 : 454-3742)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군산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산시 건축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건축법 시행규칙”을 “건축법 시행규칙 및 녹색건축물조성지원법”으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소위원회”를 “본 위원회의 위임을 받아 영 제5조의5제6항에 따른 소위원회와 법 제4조제2항 및 영 제5조의6에 따른 건축민원전문위원회, 건축계획·건축구조·건축설비 등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축물은 분야별 전문위원회”로 한다.

제6조 중 “3년 이내로”를 “2년으로”로 한다.

제11조 중 “업무담당 계장이”를 “업무담당 계장이나 업무대행자가”로 한다.

제14조 중 “5명이상 7명 이내로”를 “5명 이상으로”로 한다.

제1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조의2(전문위원회의 구성 등) ① 법 제4조제2항에 따라 구성되는 전문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5명 이상으로 구성하고, 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은 그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전문위원회의 운영은 제12조, 제13조와 제15조부터 제19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0조 제⑤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영 제6조제1항제7호의2의 규정에 따라 법 제2조제1항제11호 및 제44조를 완화하여 적용하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다만, 법제14조에 따른 건

축신고 대상 건축물에 한한다)

1. 영 별표 1 제1호 가목의 단독주택(다중주택, 다가구주택은 제외한다)

⑥ 영 제6조제2항제3호나목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비율”은 100분의 120이하로 완화하여 적용한다.

⑦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5조제2항의 기준에 적합한 건축물의 범위는 다음 각 호로 하며, 「같은 법」 제15조제3항에 따른 완화 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별표9에 따른다.

1. 「건축법」 제42조에 따른 조경설치 면적은 100분의 85 이상

2. 「건축법」 제56조 및 제60조에 따른 건축물의 용적률 및 건축물의 높이 제한은 100분의 115 이하

제23조제④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3조(건축공사현장 안전관리에치금) ④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보증서로 예치금을 예치하는 경우 그 보증서의 보증기간은 건축공사기간에 1년이상의 기간을 가산한 기간으로 한다.

제24조 “영 제11조제2항제3호”를 “영 제11조제3항제3호”로 한다.

제27조제3항의 “영 제15조제5항제14호”를 “영 제15조제5항제15호”로 한다.

제32조의1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2조의1(실내건축) 법 제52조의2 및 영 제61조의2에 따라 실내건축이 적정하게 설치 및 시공되었는지를 검사하는 대상 건축물은 다음 각 호로 하고, 검사 주기는 5년으로 한다.

1. 다중이용 건축물

2.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건축물

제3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2조의2(건축협정의 체결 등) ① 법 제77조의4제1항제4호에 따라 도시 및 주거 환경개선이 필요한 구역은 다음 각 호의 구역을 말한다.

1.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7호에 따른 도시재생사업구역

② 법 제77조의4제5항제9호에서 건축협정에서 필요한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건축협정 변경 또는 폐지에 관한 사항

2. 건축협정 이행계획에 관한 사항

3. 건축협정 이행에 소요되는 공동비용의 부담방안 등

③ 영 제110조의3제1항제3호에서 이해관계가 있는 자로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해당 토지 또는 건축물의 관리자·점유자·전세권자 및 임차인, 건축물을 사용할 권리를 가진 자

2. 건축협정인가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④ 영 제110조의3제2항제9호에서 건축물의 위치, 용도, 형태, 부대시설에 관한 사항은 군산시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내 행위제한 기준을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40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영 제81조제4항에 따라 맞벽 건축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전부에 해당하는 기준에 적합하게 건축하여야 한다. 다만, 지구단위계획구역의 경우에는 해당 계획구역에서 정한 건축기준에 따른다.

1. 맞벽 대상 건축물의 용도 : 영 별표 1에서 정하는 건축물의 용도분류 중 제1호 가목의 단독주택과 제3호와 제4호. 다만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분양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
2. 건축물의 수 : 2동 이하로 할 것
3. 건축물의 층수 : 맞벽되는 부분의 층수가 5층 이하로 할 것

제41조 제1항내지 제3항을 삭제한다.

제43조 제2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3호를 삭제하고 제4호를 제3호로 한다.

2. 2개소 이내로 설치하되, 최소폭을 5미터 이상으로 할 것
3. 조경, 벤치, 파고라, 시계탑, 분수, 무대, 전시시설 등 다종의 이용에 편리한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43조 제3항 단서규정을 신설한다.

다만, 완화할 수 있는 최대한의 범위는 당해 지역에 적용되는 기준의 1.2배에 한함

제45조 제2항 중 “냉각탑,공탑,물탱크,변전실”을 “냉각탑,물탱크,변전실,태양광 발전시설(8톤 이상에 한함)”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건축기준 등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규정에 비하여 건축주, 시공자 또는 공사감리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 규정에 따른다.

1. 건축허가를 받은 경우나 건축신고를 한 경우
2. 건축허가를 신청한 경우나 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위하여 제4조 제3항에 따른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신청한 경우

소관 실·과		건축과
입 안 자	과 장 직위·성명	건축과 장 이 광 태
	계 장 직위·성명	건축계 장 이 건 표
	담 당 자 성명·전화	나 광 장 (☎ 454-3742)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조례명 : 군산시 건축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찬성여부		이 유	비고
	찬성	반대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축법」, 「건축법 시행령」과 「<u>건축법 시행규칙</u>」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축법」, 「건축법 시행령」과 「<u>건축법 시행규칙</u>」 및 「<u>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u>」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5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5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u>소위원회</u>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p> <p>② ~ ③ (생략)</p>	<p>제5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5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u>본 위원회의 위임을 받아 영 제5조의5제6항에 따른 소위원회와 법 제4조제2항 및 영 제5조의6에 따른 건축민원 전문위원회, 건축계획·건축구조·건축설비 등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축물은 분야별 전문위원회</u>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p> <p>② ~ ③ (현행과 같음)</p>
<p>제6조(위원의 임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u>3년 이내</u>로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기간으로 한다.</p>	<p>제6조(위원의 임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u>2년</u>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기간으로 한다.</p>

제11조(간사와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 1인을 두며, 간사는 심의사항 업무담당 과장이 되고, 서기는 해당 심의 사항의 업무담당 계장이 된다.

② (생략)

제14조(소위원회) ① 위원회의 세부적인 사항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 중에서 5명 이상 7명 이내로 구성하는 소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소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 ③ (생략)

<신설>

제20조(적용의 완화) ①~④(생략)

<신설>

제11조(간사와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 1인을 두며, 간사는 심의사항 업무담당 과장이 되고, 서기는 해당 심의 사항의 업무담당 계장이나 업무대행자가 된다.

② (현행과 같음)

제14조(소위원회) ① 위원회의 세부적인 사항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 중에서 5명 이상으로 구성하는 소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소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 ③ (현행과 같음)

제14조의2(전문위원회의 구성 등)

① 법 제4조제2항에 따라 구성되는 전문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5명 이상으로 구성하고, 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은 그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전문위원회의 운영은 제12조, 제13조와 제15조부터 제19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0조(적용의 완화) ①~④(현행과 같음)

⑤ 영 제6조제1항제7호의2의 규정에

따라 법 제2조제1항제11호 및 제44조를 완화하여 적용하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다만,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 대상 건축물에 한한다)

1. 영 별표 1 제1호 가목의 단독주택 (다중주택, 다가구주택은 제외한다)

⑥ 영 제6조제2항제3호나목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비율”은 100분의 120이하로 완화하여 적용한다.

⑦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5조제2항의 기준에 적합한 건축물의 범위는 다음 각 호로 하며, 「같은 법」 제15조제3항에 따른 완화 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별표9에 따른다.

1. 「건축법」 제42조에 따른 조경설치 면적은 100분의 85 이상

2. 「건축법」 제56조 및 제60조에 따른 건축물의 용적률 및 건축물의 높이 제한은 100분의 115 이하

제23조(건축공사현장 안전관리에치금)

①~③(생략)

<신 설>

제23조(건축공사현장 안전관리에치금)

①~③ (현행과 같음)

④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보증서로

제24조(표준설계도서에 의한 건축신고) 영 제11조제2항제3호에 따라 건축신고 대상건축물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신 설>

<신 설>

예치금을 예치하는 경우 그 보증서의 보증기간은 건축공사기간에 1년 이상의 기간을 가산한 기간으로 한다.

제24조(표준설계도서에 의한 건축신고) 영 제11조제3항제3호에 따라 건축신고 대상건축물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제32조의1(실내건축) 법 제52조의2 및 영 제61조의2에 따라 실내건축이 적정하게 설치 및 시공되었는지를 검사하는 대상 건축물은 다음 각 호로 하고, 검사 주기는 5년으로 한다.

- 1. 다중이용 건축물
- 2.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건축물

제32조의2(건축협정의 체결 등) ① 법 제77조의4제1항제4호에 따라 도시 및 주거환경개선이 필요한 구역은 다음 각 호의 구역을 말한다.

- 1.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7호에 따른 도시재생사업구역

② 법 제77조의4제5항제9호에서 건

축협정에서 필요한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건축협정 변경 또는 폐지에 관한 사항

2. 건축협정 이행계획에 관한 사항

3. 건축협정 이행에 소요되는 공동비용의 부담방안 등

③ 영 제110조의3제1항제3호에서 이해관계가 있는 자로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해당 토지 또는 건축물의 관리자·점유자·전세권자 및 임차인, 건축물을 사용할 권리를 가진 자

2. 건축협정인가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④ 영 제110조의3제2항제9호에서 건축물의 위치, 용도, 형태, 부대시설에 관한 사항은 협정구역내 해당하는 지역의 행위제한 기준을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40조(맞벽건축을 할 수 있는 지역)
<신 설> 영 제81조제1항제3호에 따라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접한 대지와 건축물과 맞벽으로 건축할 수 있다.

제40조(맞벽건축을 할 수 있는 지역)

① (현행과 같음)

<신 설>

② 영 제81조제4항에 따라 맞벽 건축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전부에 해당하는 기준에 적합하게 건축하여야 한다. 다만, 지구 단위계획구역의 경우에는 해당 계획 구역에서 정한 건축기준에 따른다.

- 1. 맞벽 대상 건축물의 용도 : 영별표 1에서 정하는 건축물의 용도분류 중 제1호 가목의 단독주택과 제3호와 제4호. 다만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분양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
- 2. 건축물의 수 : 2동 이하로 할 것
- 3. 건축물의 층수 : 맞벽되는 부분의 층수가 5층 이하로 할 것

제41조(최고높이가 정해지지 않은 구역의 건축물의 높이제한 완화) ① 법 제60조제3항 단서에 따라 대지가 2이상의 도로에 접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도로에 대한 전면도로의 너비는 가장 넓은 도로의 너비로 적용하여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

<삭 제>

이는 그 부분으로부터 전면도로의 반대쪽 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의 1.5배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가장 넓은 도로에 접한 부분의 너비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접한 부분에 따라 각각 적용한다.

1. 가장 넓은 도로측의 대지경계선으로부터 35미터 이내의 부분

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부분에 있어서 당해 전면도로의 중심선으로부터 10미터 이내의 부분을 제외한 부분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한 부분이 2개의 교차되는 전면도로를 갖는 경우에 그 부분 중 넓은 도로측의 대지경계선으로부터 수평거리 35미터 이내의 부분

② 법 제60조제3항에 따라 대지와 도로 사이에 시설녹지가 있거나 도로 반대쪽에 공원, 광장, 하천, 철도 등(이하 “건축이 금지된 공지”라 한다)이 있는 도로를 전면도로로 하는 대지 안의 건축물의 높이제한은 건축이 금지된 공지를 전면도로에 포함하여 적용한다. 다만, 영 제86

조제5항의 공원의 경우에 도시공원 중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원의 일조 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공원(소공원, 어린이 공원)은 제외한다.

③ 막다른 도로의 끝에 접한 대지 안의 건축물에 법 제60조제3항에 따른 높이제한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전면도로의 반대쪽의 경계선은 대지가 접한 막다른 도로의 끝으로 부터 당해 막다른 도로의 너비에 상당하는 거리에 있는 것으로 본다.

제43조(공개공지의 확보) ① (생략)

② 영 제27조의2제3항제3호에 따라 공개공지 등에 설치하는 시설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생략)
2. 1개소의 면적은 최소 45제곱미터 이상으로서 최소폭은 5미터 이상으로 하되, 그 설치는 2개소 이내로 한다.
3. 피로티 구조로 할 경우에는 유효높이가 6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제43조(공개공지의 확보) ①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2. 2개소 이내로 설치하되, 최소폭을 5미터 이상으로 할 것

3. (삭 제)

4. 조경, 벤치, 파고라, 시계탑, 분수, 무대, 전시시설 등 다중의 이용에 편리한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③ 영27조의2제4항에 따라 건축기준의 완화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신 설>

제45조(공작물 등에의 준용) ① (생략)

② 영 제118조제1항제10호에 따라 건축물의 구조에 심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중량물이라 함은 기존 건축물에 별도로 설치하는 8톤 이상(2회 이상 나누어 설치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합계를 말한다)인 냉각탑, 공탑, 물탱크, 변전실, 화물인양기 그 밖의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

3. 조경, 벤치, 파고라, 시계탑, 분수, 무대, 전시시설 등 다중의 이용에 편리한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③ (현행과 같음)

다만, 완화할수 있는 최대한의 범위는 당해 지역에 적용되는 기준의 1.2배이하에 한한다.

제45조(공작물 등에의 준용) ① (현행과 같음)

② 영 제118조제1항제10호에 따라 건축물의 구조에 심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중량물이라 함은 기존 건축물에 별도로 설치하는 8톤 이상(2회 이상 나누어 설치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합계를 말한다)인 냉각탑, 물탱크, 변전실, 태양광발전시설(8톤이상에 한함), 화물인양기 그 밖의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

고시 제2015-93호

하천 점용허가 고시

「하천법」 시행령 제38조 따라 아래와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을 고시합니다.

2015. 7. 1

군산시장 (인)

주 소	전북 군산시 중동 272-5번지		
성명(법인명)	서해조선 (대표 여상복)		
하 천 명 칭	경포천	하 천 등 급	지방하천
점 용 장 소 점 용 목 적	전북 군산시 중동 271-1번지 외 4필지 조선소(선가대) 운영을 위한 하천점용		
점 용 면 적	2,639㎡		
최 초 허 가 일	2014년 1월 1일		
점 용 기 간	2014년 1월 1일 ~ 2015년 12월 31일		

군산시 고시 제 2015 - 95 호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 고시

「주택법」 제16조 5항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11조 규정에 의하여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 승인하고 같은법 제16조 제8항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5. 07. 08.

군 산 시 장

1. 사업명 : 군산 조촌동센트럴파크지역주택조합아파트 신축공사

2. 사업주체(변경없음)

가. 지역주택조합

- 1) 명 칭 : 센트럴파크지역주택조합
- 2) 조합장 : 강 갑 종
- 3) 주 소 : 전라북도 군산시 변영로 196

나. 공동사업주체

- 1) 명 칭 : 주식회사 제일건설
- 2) 대표자 : 윤 여 응
- 3) 주 소 : 전라북도 익산시 익산대로 124 (중앙동2가)

3. 사업내용

가. 사업위치 : 전라북도 군산시 조촌동 769-4번지의외 9필지

나. 주택구분 : 민영주택

나. 대지면적 : 9,356.7000m²(변경없음)

다. 건축면적 : 6,528.3325m²(감 8.18m²)

라. 연 면 적 : 78,614.3805m²(증 1.55m²)

마. 건축규모 : 아파트 4동 36층, 480세대

- 전용 84.8869m² 251세대

- 전용 84.9963m² 229세대

바. 구조 : 철근콘크리트 구조

사. 사업비 : 111,274,477천원

아. 사업기간(변경) : 2013년 12월 16일 ~ 2017년 03월 31일

4. 사업계획 주요 변경 사항

가. 주민공동시설 승강기 승강로 규격 변경 :

나. 84B형 드레스룸 가구배치 변경 등

5. 사업계획변경승인일 : 2015. 7. 8.

6. 설계도서 : 변경승인설계도서와 같음

7. 기타 자세한 사항의 관계도면 및 서류는 군산시청(건축과 ☎063 - 454 - 3712)에 비치되어 있으니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군산시 고시 제2015-97호

하천공사 시행계획(변경) 고시

하천법 제2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6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공사 시행계획을 변경고시 합니다.

2015. 7.

군산시장

1. 하천공사의 명칭 : 미제천 고향의 강 조성사업

2. 하천공사의 목적 및 개요

가. 목적 : 시민의 정서함양 및 역사·문화와 연계한 하천정비를 통하여
홍수에 안전하고, 다양한 생물이 서식할 수 있는 하천공간을
조성함으로 지역의 Land Mark 형성

나. 개요

구분	읍면동	하천종류	하천명	하천정비구간		사업량	비고
				시점	종점		
당초	옥구읍	지방하천	미제천	선제리 553-2	수산리 44-32	○ 하천정비 L= 3.7km	
변경	옥구읍	지방하천	미제천	옥정리 320-59	수산리 44-38	○ 하천정비 L= 3.7km	

3. 하천공사시행지역의 위치 : 전라북도 군산시 옥구읍 일원

4. 하천공사시행자의 주소 및 성명

가. 주소 : 전라북도 군산시 시청로 17 (조촌동, 군산시청)

나. 성명 : 군산시장

5. 하천공사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

- 착수예정일 : 2012. 11. - 준공예정일 : 2017. 11

6.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 소재지, 지번, 지목과 소유자 및 소유자 이외의
권리자의 명세 : 불임참조(편입토지 및 물건조서)

7. 사업비 및 자금조달계획

구분	전체	연차별 투자계획 (백만원)				비고
		2013년까지	2014년도	2015년도	2016년 이후	
사업비	20,003	6,033	1,500	1,350	11,120	

8. 관계도서 열람 및 문의처

군산시청 안전총괄과 ☎ 063-454-3852

○ 수용·사용하고자 하는 토지 및 물건 조서(1)

미제천 고향의강 조성사업 편입토지 조서(변경)

연번	토지소재					지적 (㎡)	분할 후 지번 (편입)	편입면적 (㎡)		소유자 주소 성명	소유자 관리권 기타	비고
	시 군	읍 면	리 동	번지	지 목			당초	변경			
1	군산	옥구	수산	755	답	4,613	755-1	9	8.9	군산시 옥구읍 수산리 87	장형찬	
2	군산	옥구	수산	745	답	4,678	745-1	28	28.3	군산시 옥구읍 수산리 151-53	송길수	
3	군산	옥구	이곡	662-9	답	857		857	857	군산시 조촌로118(조촌동)	신혜숙	
4	군산	옥구	오곡	663-3	답	1,768	663-17	35	35	군산시 옥구읍 이곡리 709	김점녀	
5	군산	옥구	오곡	662	답	1,896	662-14	1,620	1,620	전라북도남원시 도통동144 부영아파트 104동403호	이 기 용 외 1인	
6	군산	옥구	오곡	662-2	답	3,966	662-16	29	30	군산시 옥서면 옥봉리208-1	임화진외2인	
7	군산	옥구	이곡	669-1	답	3,322	669-3	2,672	2,613	군산시 옥구읍 선제리 109	전종태 외5인	
8	군산	옥구	오곡	660	답	4,530	660-10	3,880	3,870	서울 동작구 서달로12사길15-1(흑석동)	전호상외1 인	
9	군산	옥구	이곡	753-9	답	741	753-13	288	291	군산시 옥구읍 이곡리 753-6	고성주	
10	군산	옥구	이곡	753-6	대	594	753-12	74	124	군산시 옥구읍 이곡리 753-6	고성주	
11	군산	옥구	오곡	70-6	답	2,539	70-14	1	4	군산시 옥구읍 이곡리 753-6	고성주	
12	군산	옥구	선제	1-192	답	2,411	1-231	176	162	군산시 옥구읍 이곡리 291	전웅철	
13	군산	옥구	선제	1-191	답	1,701	1-230	66	68	군산시 옥구읍 선제리 131	김경연	국민건강 보험공단
14	군산	옥구	옥정	356-2	구	132		132	132	군산시 옥구읍 옥정리 141	염양환	
15	군산	옥구	옥정	278-5	구	10		10	10	군산시 옥구읍 옥정리 206	송덕채	
16	군산	옥구	옥정	318-4	구	7		7	7	군산시 옥구읍 선제리 423	전양민	
17	군산	옥구	옥정	349-2	구	132		132	132	군산시 옥구읍 옥정리 144	장만적	
18	군산	옥구	옥정	348-2	구	202		202	202	경성부 낙원동 143	박계양	
19	군산	옥구	옥정	322-99	답	509		367	509	안산시 단원구 초지동 731호수마을@137/1102	김정미외1 인	
20	군산	옥구	옥정	553-1	구	268		268	268	군산시 미면 미룡리 105	고한규	
21	군산		미룡	315-104	답	101	315-26 8	35	64	군산시 나운동1187-2 호2차@가동105호	전완수외1 인	
22	군산	옥구	옥정	537-9	구	13		13	13	서울시 강동구잠실동101-1 우성아파트 6동 1001호	박승만외 1인	

○ 수용·사용하고자 하는 토지 및 물건 조서(2)

연번	물건소재지				물건의종류	구조및규격	면적및수량		소유자 주소 성명	소유자 권리권 기타	비고
	시 군	읍 면	리 동	번지			당 초	변경			
1	군산	옥구	이 곡	753-6외 (753-9 753-12 753-13)	주택	조적슬래브		92.07㎡	군산시 옥구읍 이곡리 753-6	고성주	
					주택및화장실	조적슬래브		38.79㎡			
					창고1	일괄		2.23㎡			
					창고2	철재판넬지붕		10.50㎡			
					보일러실	조립식판넬지붕		5.86㎡			
					담장	적벽돌및블록		70.3m			
					대문	철재		1식			
					바닥포장	콘크리트		147.89㎡			
					관정	관정사포함		1식			
					아궁이			1식			
					화단	장미,향나무포함		3㎡			
					비닐하우스			42㎡			
					비닐하우스	정화조포함		95㎡			
					비닐하우스	정화조포함		95㎡			
					비닐하우스			174㎡			
					창고			42㎡			
					화장실	이동식		1식			
					철재울타리			80m			
					철쭉			1주			
					단풍나무			14주			
					감나무			2주			
					복분자			45㎡			
					보리수			1주			
					배나무			8주			
					남천			1주			
					목단			2주			
구기자			1주								
동백			1주								
대추나무			1주								
소나무			11주								
오가피			4주								
호두			1주								

○ 수용·사용하고자 하는 토지 및 물건 조서(3)

연번	물건소재지				물건의종류	구조및규격	면적및수량		소유자 주소 성명	소유자 권리권 기타	비고
	시 군	읍 면	리 동	번지			당초	변경			
1	군산	옥구	이 곡	753-6외 (753-9 753-12 753-13)	사과			1주	군산시 옥구읍 이곡리 753-6	고성주	
					매실			3주			
					사철			1주			
					두릅			20m ²			
					뽕나무			2주			
					해당화			2주			
					백일홍			2주			
					복숭아			1주			
					황금측백			120주			
					장미			1주			
					호랑가시			2주			
느릅나무			1주								
2	군산	옥구	옥 정	569-1	밤나무			1주	군산시 옥구읍 이곡리 753-6	고성주	
					향나무			2주			
					사철			8주			
					감나무			7주			
					무궁화			13주			
					앵두			2주			
					구기자			3주			
					배나무			5주			
					단풍나무			1주			
					무화과			1주			

군산시 고시 제 2015-98 호

도로명주소(부여·폐지) 고시

「도로명주소법」 제18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3조 제6항에 따라 건물 등에 부여·폐지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 07. 15

군 산 시



○ 도로명주소 부여 : 23건

지번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 고시일	도로명주소 고시일	도로명 부여사유
별 도 열 람				

○ 도로명주소 폐지 : 3건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 고시일	도로명주소 고시일	도로명 부여사유
별 도 열 람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청 토지정보과(☎454-3983)에 문의 또는 새주소 안내 홈페이지(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변경 등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의3 및 제9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제7항에 의거 당해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